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
## I. 권한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집니다.

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.

## II. 구성

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서 선임하고 해임하며,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.
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,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.
3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.
5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,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.
6.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,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.
7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후보의 추천,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의 할 수 있습니다.
8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안건 및 그 내용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